

제목: <여성의 종속> 요약·인용

출처: John Stuart Mill, The Subjection of Women, 1869을 옮긴 것으로 Three Essays: On Liberty, Consideration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Subjection of Women, introduction by Richard Wollhei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을 번역 대본으로 삼은 <여성의 종속>, 서병훈 역, 책세상, 2006

요약및인용: 이한

※ “ ” 또는 []는 직접 인용. 나머지는 요약. ()안의 글은 인용자의 논급. 인용은 법철학 및 헌법적 추론 방식에 시사를 주는 추론 방식을 중심으로 하였음.

18-20 (차별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수단의 적절성 검토시 유의점에 시사를 주는 밀의 논의는 아래와 같다. 즉, 평등은 강한 규범적 타당성의 추정을 받으며, 차별의 목적은 그것을 뛰어넘는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본성에 대한 사변적인 추론을 근거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수단의 적절성은 단지 개연성에 대한 자유연상적 연계만으로는 되지 않고 다른 대안과의 적극적인 비교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그것이 무엇인가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아니면 적어도 과거 한때 그랬다는 강한 기대감을 품게 된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과거의 경험을 빌려 특정 제도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제도는,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거나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지위를 누리는 제도, 아니면 이런 여러 양상들이 혼합되고 상황에 따라 각각 상이한 조직 원리가 적용되는 등 지금과는 다른 사회적 조직 양상을 골고루 시험해본 뒤, 그런 경험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면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지배하는 제도의 경우는, 어느 모로 보나 정반대의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첫째, 약한 쪽을 강한 쪽에 완전히 복속시키는 현재의 이 제도가 더 좋은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단지 이론에 입각해서 그런 주장을 펴고 있을 뿐, 다른 양상은 전혀 시험해보지 않았다. ... 둘째, 그렇다고 이런 불평등한 제도가 심사숙고의 결과이거나 신중한 해안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법과 정치 체제는 단순히 물리적 사실에 불과했던 것을 법적 권리로 전환시키면서 사회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런 권리들을 주장하고 보호해주는 공적·조직적 수단을 확립함으로써 ... 이미 복종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지배당하게 된다.”

42, 44 근대 세계의 원칙 - 선택의 자유. 본질에 맞는 간섭 X

42 “이 이론이, 모든 과정이 똑같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거나,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똑같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의 자유 선택이 최선의 과정을 이끌어내고, 또 그 과정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하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이제는 아무도 팔 힘이 강해야만 대장장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와 경쟁이 보장되면 대장장이는 팔 힘이 강한 사람 중에 나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팔 힘이 약한 사람은 자신에게 더 잘 맞는 다

른 일을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44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것은, 무능한 사람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지도 못하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58-60 (“여자는 애를 낳아야지. 애를 안낳으면 사회가 망한다.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를 주면 안된다.”는 당대의 주장에 대하여 밀이 반론한 것은 기본권적 자유와 관련하여 매우 곱씹어 볼 가치가 있다. 즉, 혜택과 부담의 자기 조정 시스템이 사회에서 작동한다면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아무도 해당 필요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강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일반적 논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징병제나 거주 이전의 자유 금지, 직업 선택의 자유 금지, 아이 낳기 강제 등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상 부담과 비용의 공정성을 일그러뜨리면서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징병제를 실시한다면 그것은 징병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무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3D업종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방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굶은 일이 힘들고 낮은 계층에게 몰려 있다는 이유로 강제 요역제를 실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래 밀의 논변은 드워킨의 기회비용의 평등 논리 및 가장 기본적인 심사 기준으로 파레토 기준을 쉽게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투표의무화의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에는 혜택과 부담의 자기 조정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투표를 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방도는 없다.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아니할 자유는 기본권적 자유가 아니다. 이것은 형량시 자유권의 추상수준 선택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동성애의 자유’와 같이 형량대상을 정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와 같이 정해야 한다. 단일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형량 심사를 할 때, 심사자가 자신의 편견에 좌우하여 자유에 부당하게 적은 비중을 주게 되는 위험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거주이전의 자유’라고 해야지 ‘서울로 가서 살 자유’라고 하면 안된다. 그렇게 되면 당장 ‘모두가 서울로 가고자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단 말이나?’하는, 자기조정 시스템을 무시한 우려가 암암리에 형량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즉,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심사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자유는 자기조정시스템의 작동범위를 포함하도록 추상수준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 주제에 관한 글들-이를 테면 “사회를 위해서는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은 자발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제적으로 시켜야 한다” 같은 글-이 이미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의 타당성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루이지애나의 노예 주인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목화와 사탕수수를 길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품삯으로 얼마를 주든, 검둥이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억지로라도 일을 시켜야 한다.” 이보다 강제 징병을 예로 드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쉬울 것이다. 나라를 지키자면 수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강제로라도 그들을 군대에 보낼 권력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얼마나 자주 써먹었던가? 그리고 한 가지 흠만 아니라면, 이런 방식은 분명히 지금까지도 통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병들에게 그 수고에 합당한 대우를 먼저 해주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당신을 위해 그들이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 받는 만큼 대우해준다면, 그들을 확보하는 데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는 않

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논리적 대답은 없다. 오늘날 다른 사람의 노동의 대가를 훔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럴 생각도 없는 상황에서, 징병제는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없다. 여성에게 다른 기회의 문을 다 닫아버린 채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 하는 사람은 강제 징병론자가 직면했던 것과 같은 반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남성 자신도 여성이 혹해서 스스로 결혼을 하고 싶어할 정도로 결혼 생활을 아주 멋지게 만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 아니면 그만두고’라는 홉슨 John Atkinson Hobson 식의 양자택일만 허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혜택을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것이 바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진 남성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 남성이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이 평등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서워한다. ...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일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경우, 거역할 수 없는 유혹 때문에 당분간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능력이 탁월한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운명을 선택할 리가 없다.]

(위의 논변은 또한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이나 쿠폰에 의한 배당금을 제공하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에 대한 대응도 된다.)

75-76

(아래의 논의는 권력 범죄에 있어서의 형식적 법적 조치만으로는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노동, 환경 사건과 같은 곳에서 증거법칙의 문제로 중요한 것이다. 노동 사건의 경우, 사용자는 내부 문서를 마음대로 작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안전교육을 매우 열심히 했다면서 정기적인 안전교육 문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실제로 안전교육을 한 적은 없다. 이 경우 노동자는 안전 교육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또한 사용자는 다른 노동자들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진술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쉽게 한다. 실제로 동료 노동자가 나와서 사용자를 위하여 위증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것이 위증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 또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만일 판사들이 이러한 입증 문제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일한 증거법칙으로 노동사건을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즉, 사용자가 제출하는 사용자의 내부 문서는, 노동자가 그 기재내용을 부지로 답하는 한, 그것이 당해 쟁송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서명 날인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거나 독립적인 증거력은 갖지 못하고 오직 간접적인 증거력만 갖는다고 보는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매우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5년 이상의 생활임금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고, 사용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아내를 극단적으로 억압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에 대해 일부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그 결과는 미미하기만 하다. 그리고 그런 시도가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런 조치가 피해자들을 든든한 법의 보호 아래 두면서 남편의 가혹 행위를 실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적인 기대일 뿐,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되거나, 그런 이유로 첫 번째 판결을 받은 뒤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 무조건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 최소한 법적으로 별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이런 ‘악질적 가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기소를 담당할 검사나 여성의 편을 들어줄 증인이 없는 탓에 좌초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104-105

(아래 역시, 본성을 들먹이며 어떤 직업이나 임무를 할당하는 간섭주의 태도의 불합리함을 반박하는 일반적인 논증이 될 수 있다. )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의 정신 능력이 남성이 그것보다 떨어진다거나, 고도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일과 직종에 적합한 여성의 수가 남성에게 비해 모자란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차라리 여성은 아예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정신 능력 면에서 아무리 뛰어난 여성이라 하더라도 현재 그 일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남성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정신적인 능력만 문제가 된다면, 최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래 정도 수준에 관한 한 여성이 도달하지 못한 분야는 거의 없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런 일을 놓고 남성과 경쟁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여성에게 사리에 전혀 맞지 않게 폭압을 행사하는 것이요,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을 끼치는 처사라고 단언할 수 있지 않겠는가?”

106-107

“그런 불의는 당사자인 여성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능력을 발휘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피해를 입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은 의사나 변호사, 의회 의원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는 것은 그들에게만 상처를 주는 일이다. 그런 의사나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런 의원을 선출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개인적인 선택의 폭이 좁아졌을 뿐 아니라 상호 경쟁을 통해 경쟁자들의 보다 큰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 전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유 확보에 의한 파레토 논증은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이나 본질을 운운하며 직관적으로 저어하던 사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장매매의 경우에 장기는 ‘팔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여성은 직업을 갖지 않는 존재다’라고 본질을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질 낮은 논증이다. 신장을 사려는 사람은 그 신장이 없으면 죽을 것이고, 신장을 팔려는 사람은 하나의 신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돈이 매우 애타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 둘 사이의 교환을 금지시키려면 본질이나 본성 운운보다는 나은 논변이 필요하다. 나는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시켜 주는 그러한 논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장 매매의 경우는 노예제와는 다르다.

A가 B에게 무엇인가를 받고 노예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자기자신을 노예로 주겠다고 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도 금지된다. 왜냐하면 A는 노예가 됨으로써 스스로 책임 있게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의 목적적 작용과 자율

을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는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신장을 A가 B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금지되지 않고 오히려 장려된다. 즉, A가 장기를 B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하더라도 A는 소실되지 않으며 그 자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가 B에게 무상으로 신장을 주는 행위는 그 유효성이 전적으로 인정된다. 신장의 매매에 있어 초점이 되는 것은 신장을 준다는 행위를 허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신장을 유상으로 준다는 행위를 허용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상품화’나 ‘본질’이니 하는 논변은 아무런 논변이 못된다. A와 B 모두 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C의 해약을 막기 위한 것이거나, A와 B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상으로 신장을 기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되는 C의 분명한 해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금지를 통해 A와 B는 모두 금지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나빠진다. 특히 신장을 사려는 사람 A는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게 된다. 신장매매를 본질에 의해 금지시키고자 하는 논변은, 이러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박한 처지의 사람의 이해관심을 아예 고려사항에조차 넣지 않는다. 그냥 죽으라는 것이다.

여기서 단지 추상적인 공정성 논변만으로는 신장매매를 반대를 할 순 없다. 그렇게 되면 굶은 일을 가난한 계층에서 주로 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전 사회의 요역화를 달성해야 하고, 직업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시될 수 있는 논변은 약한 은정적 간섭주의 논증과 합리적인 사회적 규율 논증 밖에는 없다. <콜버그의 호프집>에서는 이 논증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수복불가능성’이라는 공통점만을 살펴보고 장기의 무상 기증은 인정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노예제와 신장매매의 차이점을 보지 못하였다.

규제되지 않은 신장 매매는, 병에 걸린 신장의 유통, 처치와 수술의 간소화, 그리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수복불가능한 사태를 당장의 빛을 피하기 위하여 감수하는 것, 실제로 그렇게 신장을 팔고 나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은 전혀 없으며 모두 채무의 변제에 쓰이게 된다는 점, 그리하여 실제로는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았어야 할 사람들이 마치 신장이 커다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듯 여겨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러한 담보 계약이 설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물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점, 그리고 신장이 한 개가 된 사람들이 이후에 쉽게 신장병이 걸렸을 때 맞이하는 어려움 등등의 문제, 신장병에 걸린 사람 중 돈이 많은 사람 순서로 구출된다는 점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여기서 내가 제안하는 논증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장기 기증이 합법하다는 점을 토대로 하여, 장기 기증에 대한 규제된 금전적 보상으로 나아가는 논증이다.

1) 신장 기증의 수술은 이타적 희생이다.

2) 수술을 하려면 몇달간의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자유가 제약될 뿐 아니라, 수술의 고통,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수술 후 상당한 휴식기간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경우 자유의 제약,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직업이나 학업생활의 중단, 신장이 1개임으로 인하여 육체의 온전성과 능력이 이전보다는 떨어진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부담이 수반되고 이 부담은 보상되어야 한다.

3)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은 사회가 의료의 중요한 부분을, 선의를 제공하는 사람을 착취하는 형국이다.

4) 또한 단지 직업생활을 중단함으로써 생긴 물질적인 소득기회의 박탈만을 보상하는 것은 충분한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담하지 아니할 부담을 장기 기증자에게만 덤태기 씌우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기 기증자는 무척 적게 되고, 그 결과 장

기가 몹시 필요하고 기증되는 신장이 없으면 죽는 사람의 이해관심은 철저하게 무시된다.

5)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 그리고 경력이나 학업 생활 자체의 지체로 인한 불리함, 육체의 온전성과 능력의 저하 및 이후 발병 위험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보상이 필요하다.

6) 이러한 보상은 일시금 금전으로 주어질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와 같이 수복불가능한 희생을 감수한 보상으로 받은 중요한 것을 (파산이나 희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변제하는 등으로 쓰거나, 도박이나 주식 투기 등으로 날려 버리는 일을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즉,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해 보상의 수령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그 보상의 형태는 규제할 수 있다.

7) 인간의 신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담보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채무 변제에 쓰일 수 있는 형태로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다액이나 다중채무의 경우 그것은 그와 관련된 제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그러한 처지에 빠진 사람이 신장을 팔게 하여 부실채권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다만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에게는 상담사가 밀착하여 상담을 하며, 생활상의 어려움을 최대한 법률적 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밀착 조언하며, 이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등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8) 첫째로 보상공금은 1) 교육비 2) 식비 3) 주거비 4)의료비와 같은 곳에 쓸 수 있는 특별한 생활급여의 형태로 주어진다. (예를 들면 쿠폰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에게 그 쿠폰과 전자화폐를 바꿔올 수 있다) 급여는 매달 지급되며, 교육비의 경우에는 급여 상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보상공금의 최저수준-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상실된 기회소득-은 일반 세금으로 부터 나오나, 그 이상의 급여는 아래 9항에서 설명할 보상공금 재원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보상공금의 규모는 입법으로 정해진 최저한도를 가지지만 보상공금 기부 수준에 따라 그보다 늘어날 수 있다)

9) 둘째로, 향후 장기 기증으로 치료될 수 있는 병이 걸렸을 때,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제1순위의 자격을 얻는다. 이로써 신장이 하나가 되어 나머지 삶을 살아감으로써 생기는 부담을 보상할 수 있게 된다.

제2순위의 자격은 자신이 사고를 당했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장기를 기증받는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전에 등록한 사람이 갖는다.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제3순위의 자격은, 혈액 등 재생가능한 신체의 일부를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의 순으로 갖게 된다. (헌혈 카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제4순위의 자격은, 보상공금 재원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다. 이 돈은 자신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를 기증한 전체 인원의 급여로 분산되는 돈으로 합산되어 처리된다. 이로써 누구에게 장기를 기증하느냐에 따라서 현저한 불공정이 발생하는 일은 사라진다.

이와 같은 순위제를 실시하면, 장기와 혈액 등의 기증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면서도 이것이 상품화되지는 아니하며, 단지 자신의 삶에 기증으로 인해 생긴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가 이러한 사람의 선의를 빌미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또한 그 보상은 자기조정적 기능을 가져야 하므로 고정되어 있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그러한 보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와 무관하게 결정해

서도 아니될 것이다.

나로서는 위와 같은 규제된 신장 기증의 유상 보상 체제보다 더 나은 체제를 생각할 수 없다.)

147

(여성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은 실속 없는 찬사라는 밀의 이야기. 본성에 의한 우월성을 기초로 할당을 요하는 목소리는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야기다. 이러한 모든 논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독립적 기준이 없다면 누구의 본성이 더 우월한가를 이야기할 수 없고, 독립적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두 성에 모두 바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롤 길리건처럼 여성은 판사처럼 판단하는데는 좀 떨어지고 배려의 윤리에 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실증적으로도 아무 근거가 없지만-은 사회제도의 설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판사직에 부합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조사하는 심사 방법에 의해 채용하면 된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배려심이 중요한 직업이라면 배려심을 직접 알아보면 된다. 남성은 이렇고 여성은 이렇다라는 모든 가쉽거리와 이야기로부터 어떤 본성에 따라 전형적으로 직위를 할당시키는 제도적 설계를 주장하는 모든 논의는 따라서 무용하다)

“지적 차이와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도덕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흔히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선이 그어지고 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속 없는 찬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이 올바른 여성이라면 이에 대해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148-149

“여성의 도덕적 우월성에 대해 찬사의 말이 들리는 한편,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 즉 여성이 도덕적 편견을 가지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비판도 자주 제기된다. 다시 말해 여성은 개인적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까닭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동정심과 반감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남성이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사를 구분 못하는 경우보다 더 자주 있는지는 앞으로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이 경우 남성은 자신이 담당해야 할 의무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우선 배려하는 반면 여성은 (자기만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가 될 것이다.”

<끝>